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4,040,530	9,721,216
일반회계	288,980,589	8,669,418
특별회계	35,059,941	1,051,798
기타특별회계	35,059,941	1,051,7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97,162	122,915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695,024	20,851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265,000	7,950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623,175	18,69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718,953	141,569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18,193,341	545,8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387,980	71,639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009,334	30,28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2,940,400	88,212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29,572	3,88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15,85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09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